

# 수수료 및 벌금

2010년 공중위생법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이 2012년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본 법률과 규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주요 요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정보 안내서 시리즈가 마련되었습니다. NSW 보건부 웹사이트 ([www.health.nsw.gov.au/phact](http://www.health.nsw.gov.au/phact))에서 본 법률과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신청료 및 통지료

2012년 공중위생 규정에 따라, 다음 표에 나온 부문과 관련하여 신청료나 통지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나 통지 업데이트의 경우 추가 납부금이 없습니다.

<b>제 6항</b>	병원의 온수 시스템 설치 허가 신청	\$160
<b>제 11항</b>	수냉 및 온수 시스템 설치 통보	\$100 이하
<b>제 19항</b>	공용 수영장 및 스파풀 통지	\$100 이하
<b>제 31항</b>	피부 투과 시술 실시 통지	\$100 이하
<b>제 70항</b>	죽은 사람의 유해 발굴 신청	\$320
<b>제 78항</b>	매장된 지 최소 10년 이상된 죽은 사람의 유해 화장 신청	\$100
<b>제 89항</b>	영안실이나 화장터 등록에 포함 사안 통지	\$100 이하

## 개선 통지 및 금지 명령

2010년 공중 위생법에 따라 개선 통지나 금지 명령이 발급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통지나 명령의 사유 그리고 통지나 명령이 발급된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a) 조절 시스템이 있는 장소의 점유 거주자에게 개선 통지나 금지 명령이 발급된 경우:		(b) 그 밖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전	\$500	2013년 7월 1일 이전	\$250
2013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및 2014년 7월 1일 이전	\$515	2013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및 2014년 7월 1일 이전	\$255
2014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및 2015년 7월 1일 이전	\$530	2014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및 2015년 7월 1일 이전	\$260
2015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및 2016년 7월 1일 이전	\$545	2015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및 2016년 7월 1일 이전	\$265
2016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560	2016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	\$270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의 재조사는 본 법률의 제46(1)절에 따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실시해야 하며, 해당하는 장소의 점유 거주자는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이동에 소요된 시간 제외)에 대해 시간당 \$250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벌금

### 벌금

본 법률과 규정의 특정 부문에 의거하여,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 위반 통지를 발급받게 되며, 아래 표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벌금은 기소 내역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일일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레지오넬라 규제

2010년 공중보건법	제 28절	규정의 제6(3)항 위반 - 공기관리 시스템에 공기 공급 필터 장착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 \$550 기업 \$1100
	제 31절	장소에 수냉 또는 온스 시스템이 설치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제 47절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 \$1,650 기업 \$3,300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제10(1)항	매년 책임자에게 시스템을 검사 인증 받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제13 관항	금지명령을 진열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 피부 투과

2010년 공중보건법	제 38(1)절	제23(1)(b)항 위반 - 쓰레기 통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개인 \$110 기업 \$220
		제23(1)(c)항 위반 - 깨끗하고 따뜻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이 급수되는 세면대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개인 \$550 기업 \$1100
		제25(1)항 위반 - 적절한 칼 보관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개인 \$550 기업 \$1100
	제 38(2)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제 47절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 \$1,100 기업 \$2,200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제 33항	금지명령을 진열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 수영장 및 스파풀 규제

2010년 공중보건법	제 35(1)절	일정 1의 제3(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수영장에 자동 또는 연속 계측 투여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	개인 \$550 기업 \$1100
	제 35(2)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제 37절	금지명령을 진열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제 47절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 \$1,100 기업 \$2,200
2012년 공중위생 규정	제 17(4)항	장관이 발급한 임시 폐쇄 명령을 진열하지 않은 경우	개인 \$220 기업 \$440

### 자세한 정보 보기

2010년 공중위생법과 2012년 공중위생 규정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시 의회 문의
- 현지 공중보건소 문의
- NSW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환경보건 검색

<http://www.health.nsw.gov.au/publichealth/environment/index.asp>

- NSW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공중 위생법과 공중 위생 규정 검색

[www.health.nsw.gov.au/phact](http://www.health.nsw.gov.au/phact)